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3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9.  
발의자 : 정희용 · 고동진 · 안철수  
김선교 · 박충권 · 배준영  
최수진 · 박준태 · 주호영  
김상훈 · 추경호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·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, 동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.

그러나 농어촌인구 감소 및 농어가 고령화,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 조세특례가 일몰종료될 경우, 농어민 소득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협 · 수협 · 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 기반 약화로 농어민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예탁금 ·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88조의5, 제89조의3).

## 주요내용

- 가.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·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안 제88조의5)
- 나.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·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제89조의3).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,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

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	-----
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	-----
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	-----
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	-----
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	-----
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	-----
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	-----
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-----.